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2023학년도 안전교육

- 임상실습 ORIENTATION -



대구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목차

I. 감염관리 및 비상연락체계	2
1. 현장실습 전 관리	3
2. 자가모니터링 작성	6
3. 감염 의심증상 발현시 행동수칙	7
4. 비상연락체계	8
5. 임상실습 준수 서약서	9
6. 임상실습 전 작성 서류	10
II.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11
1. 사고발생 시 행동수칙	12
2. 사고발생 시 학과 지침	15
3. 안전사고 대응 지침	18
III. 감염관리지침	21
IV.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31
V. 환자 정보 보호	36
VI. 성희롱 예방 및 대처	42
VII. 안전사고예방	44
VIII. 기타 유의사항	48



I. 감염관리 및 비상연락체계

1. 현장실습 전 관리

▶ 실습기관별 지침에 따름.

- 코로나 백신 접종
- 실습 전 코로나 검사(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2022. 11. 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코로나19 주요 증상

-  마른기침, 인후통
-  발열
-  피로 근육통
-  후각·미각 손실

검사 방법

- ✔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코로나19 관리 지침 (질병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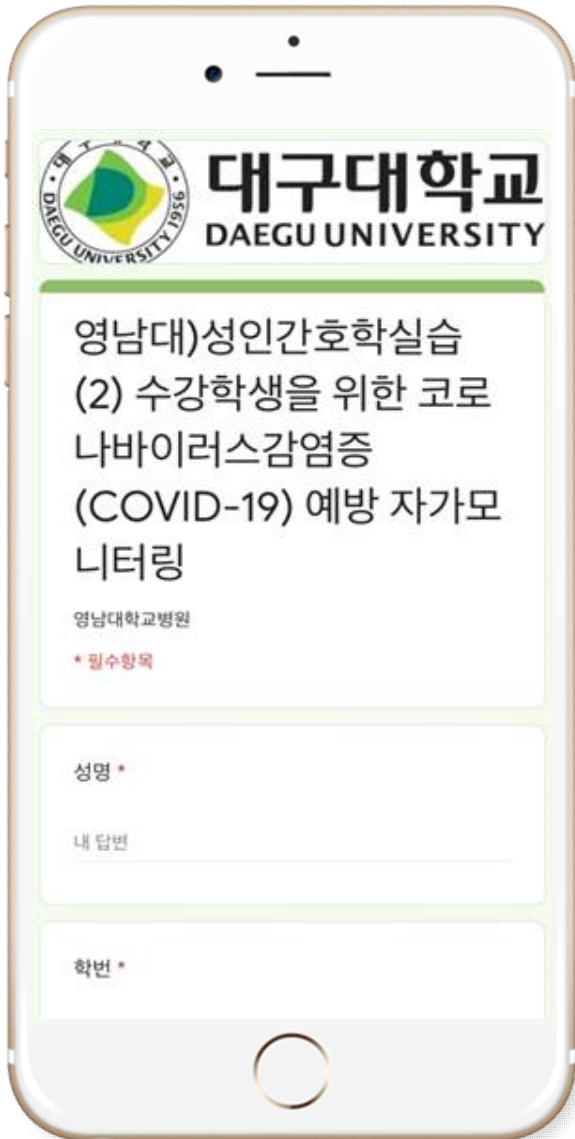
코로나19 검사


실습 시작 전에 **고열, 기침, 콧물, 인후통 등** 증상있는 경우 코로나 검사 시행이 원칙!!

- 실습 시작 전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임상실습담당교원에게 보고 후 코로나 검사 실시하기!!
- **검사 결과 및 격리기간**을 임상실습담당교원에게 보고 하기

* 일부 실습기관에서는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 선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2. 자가모니터링 작성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영남대)성인간호학실습
 (2) 수강학생을 위한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
 (COVID-19) 예방 자가모
 니터링

영남대학교병원
 * 필수항목

성명 *
 내 답변

학번 *

GOOGLE FORMS 이용

각 조 실습 대표에게

GOOGLE FORMS 양식 전달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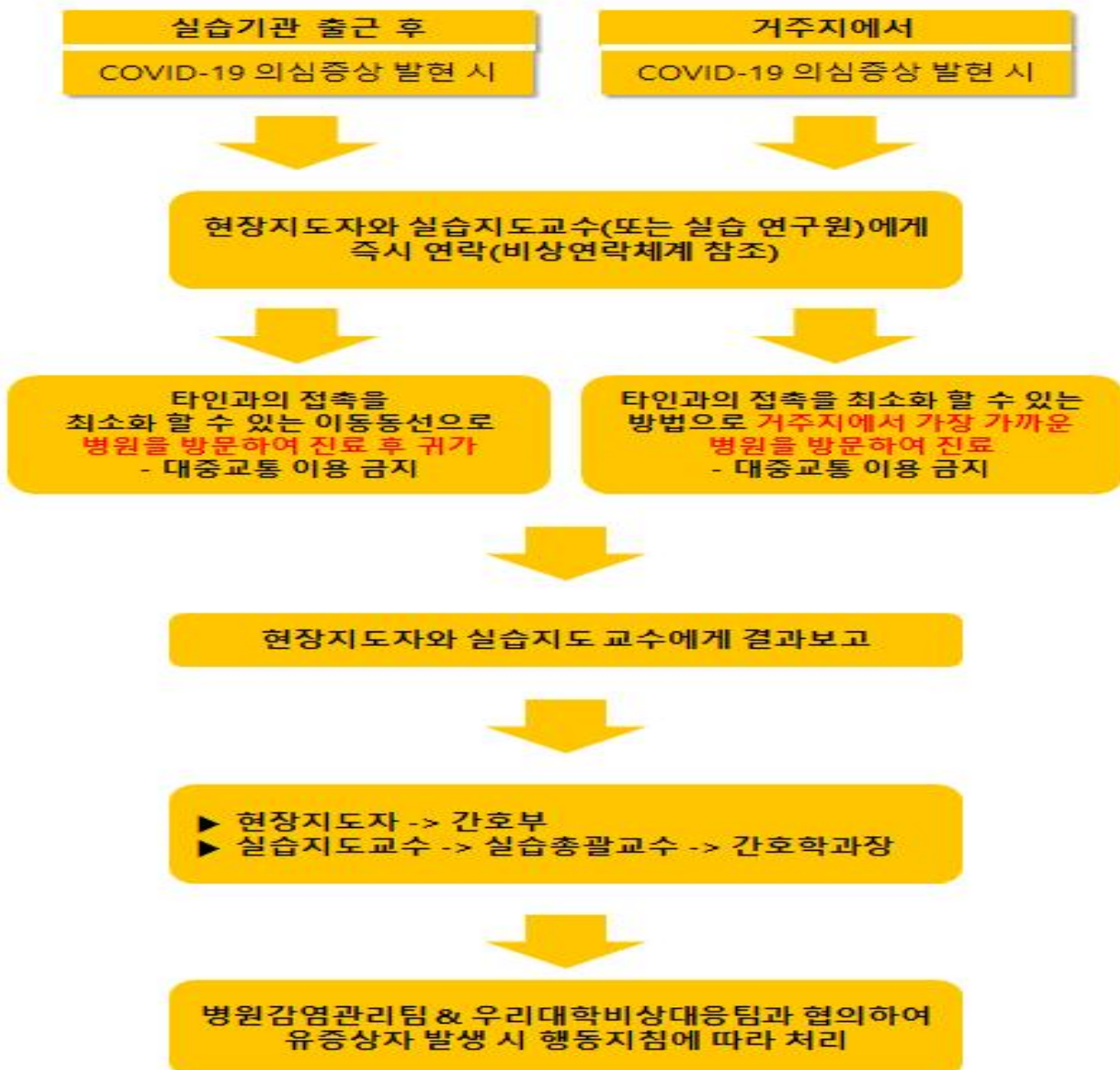
1. 실습 당일 체온 및 증상들을 작성
2. 실습하는 날 전부 기록

3. 감염의심증상 발현시 행동수칙

실습기간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증상 발현 시 행동 수칙 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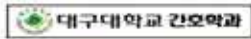
실습기간 중 COVID-19 의심증상 발현 시 행동 수칙



4. 비상연락체계

실습지침서의 비상연락체계 확인

- 실습조장은 실습 시작 1주 전에 실습조 연락체계 재확인할 것.



비상연락체계 00간호학실습 2023-1학기

간호학과장 황혜남 교수
010-3134-5039

행정실 김성완 과장 053-650-8016
연구원 임수정 선생 053-650-8375

실습총괄		교수 (T.)			
구분	A	B	C	D	
	병원	병원	병원	병원	
실습일	담당 교수 T. 010-	담당 교수 T. 010-	담당 교수 T. 010-	담당 교수 T. 010-	
	*실습조장 실습조원 실습조원				
	*실습조장 실습조원 실습조원	*실습조장 실습조원 실습조원	*실습조장 실습조원 실습조원	*실습조장 실습조원 실습조원	
	*실습조장 실습조원 실습조원	*실습조장 실습조원 실습조원	*실습조장 실습조원 실습조원	*실습조장 실습조원 실습조원	
	*실습조장 실습조원 실습조원	*실습조장 실습조원 실습조원	*실습조장 실습조원 실습조원	*실습조장 실습조원 실습조원	
	*실습조장 실습조원 실습조원	*실습조장 실습조원 실습조원	*실습조장 실습조원 실습조원	*실습조장 실습조원 실습조원	

*:실습 조장
실습조장은 실습시작 1주 전에 실습조 연락체계 재확인할 것

5. 임상실습 준수서약서

<2022.12. 수정안1>

임상실습 준수서약서

(안전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개인정보보호)

대 학 : 대구대학교 간호대학

학 년 :

학 번 :

성 명 :

- 임상실습 전 지도교수가 실시하는 임상실습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준수한다.
- 대면 실습 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수칙 및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실습기관 출입 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의심스러운 경우 출근하지 않고 실습교과목 담당 교수, 학교 담당자 및 실습기관(실습부서 담당자)에 즉시 연락 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시행한다.
 - 발열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실습 책임자에게 미리 연락을 취한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외출하지 않는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면 실습교과목 담당 교수, 학교 담당자, 실습기관(실습부서 담당자)에 즉시 알린다.
- 임상실습 시 환자의 권리신장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임상실습 시 실습관련 인적 및 물적 정보에 관한 모든 사진이나 글을 인터넷, SNS(Social Network Service) 혹은 공공물 등에 게시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학내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임상실습 시 안전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방역지침과 학교와 병원의 방역 지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시에는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보호자: (인)

대구대학교 간호대학장 귀중

6. 임상실습 전 작성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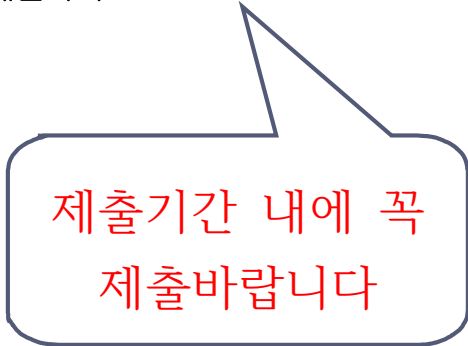
(1) 실습 전 **임상실습 준수서약서** 작성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기

(원본은 학교에서 보관, 사본은 실습기관으로 제출)

(2) 예방접종 서류 및 X-ray 결과지 제출

(3) 기타 서류 제출 (실습기관별 차이 있음)

- ① OT 출석부 (실습기관/부서) 사인하기
- ②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실습생 준수서약서
- ③ 의료정보 보호 및 보안 서약서
- ④ 감염 관련 교육 확인서



제출기간 내에 꼭
제출바랍니다



II. 사고발생시 대처방법



1. 사고발생시 행동수칙

혈액매개 질환 노출 시 처리절차

- 1) 찔림사고 후 즉시 감염관리실/실습담당자에게 보고
- 2) 위험요인에 따른 검사 예방약제 투여 신속한 조치 필요
- 3) 주사바늘 찔림사고 발생 직후 조치
 - 환자 혈액이 묻은 주사바늘에 찔린 경우: 찔린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기
 - 상처부위 소독, 피를 짜내는 것이 혈액매개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을 감소시킨다는 근거는 없지만, 소독제 사용이 금기사항은 아님
 - 상처부위에 락스와 같은 부식성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소독제를 주입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음
 - 눈이나 입 점막에 피가 튀었을 경우: 물로 씻어내기

주사바늘 찔림사고 예방 지침



안전관리 - 자상

[찢림사고로 인한 감염확률]

감염원	감염발생
HBV	
HBeAg+	22.0-30.0%
HBeAg-	1.0-6.0%
HCV	1.8%
HIV	0.3

안전관리 - 자상예방 (수행 중)

- 시술 공간과 날카로운 기구의 위치에 대하여 주의를 유지한다.
 - 기구 조직 시는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주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 날카로운 기구는 직접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트레이 등 'neutral zone'을 이용하며, 구두로 알린다.
 - 재사용을 하기 위해 recapping 해야 하는 경우는 One-hand technique 사용한다.
 - 정리 시 트레이나 침상 등을 잘 살펴 날카로운 기구를 확인한다.
 - 재사용 기구는 떨어뜨리거나 옆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뚜껑 있는 용기에 담도록 한다.
 - 손상성 폐기물 박스가 가득 차 있는지, 충분한 크기인지 확인한다.
 - 손상성 폐기물 박스에 손을 대거나 넣거나 하지 않는다.
 - 폐기 시 손은 항상 기구의 날카로운 부분 뒤에 위치하도록 한다.
 - 나비바늘과 같이 튜브가 연결된 기구는 튜브가 꼬이면서 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2. 사고발생시 학과 지침



임상실습 중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간호대학 임상실습교육 내규]

제14조 (사고발생)

임상실습 도중 사고발생 시 즉시 임상실습지도교원과 실습지도자에게 보고하고, 학과장에게 사고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5조 (안전관리)

- ① 임상실습 중 사고발생 시 안전사고대응체계에 따라 대처한다.
- ② 임상실습 도중 사고발생 시 즉시 임상실습지도교원에게 보고하고, 학과장에게 사고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6조 (안전관리자)

- ① 학교는 임상실습담당 연구원 1인을 학생의 학교안전관리자로 둔다.
- ② 학교안전관리자는 학생의 비상연락체계를 임상실습 전에 확보해야 하며 비상연락체계는 전체 학년 및 각 교과별 사전 실습교육을 통해 공지된다.
- ③ 임상실습 전 학생의 임상실습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임상실습 시작 전 보험가입이 완료되도록 한다.

제17조 (안전의무)

- ① 실습학생은 ‘대구대학교 국내현장실습 수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실습학생은 각 실습기관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임상실습 전 보험가입 의무

[간호대학 임상실습교육 내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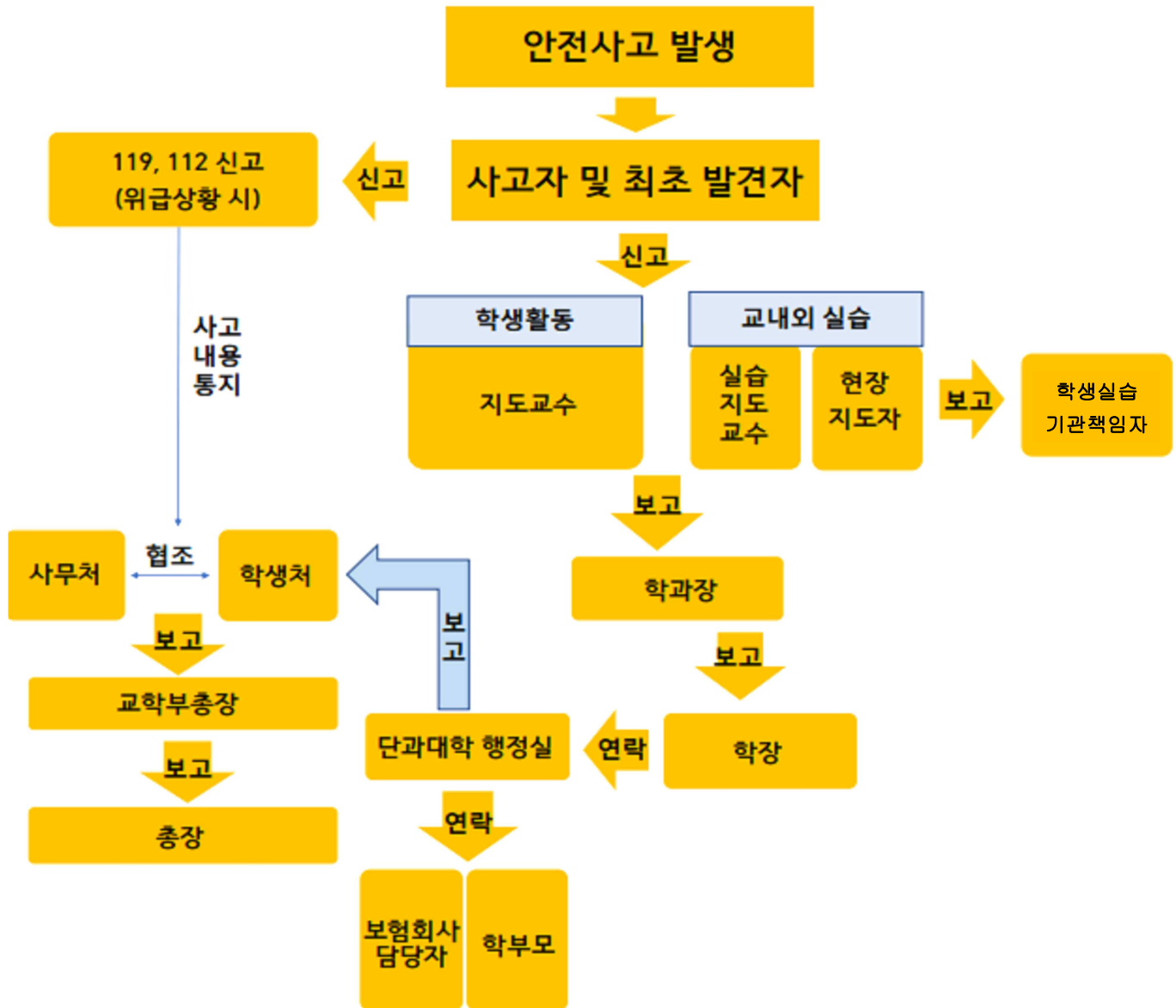
제20조 (실습보험가입 의무)

- ① 실습학생은 임상실습 시작 전 반드시 임상현장실습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학교가 지원한다.
- ② 학교는 임상실습 보험가입 여부를 해당 실습기관에 통보한다.



3. 안전사고 대응 체계

안전사고 대응 체계





임상실습 사고보고서

학 년 :
학 번 :
성 명 :

실습장소 :

사고일시 :

사고내용 :

처 리 :

년 월 일

학생 : (인)

수간호사 : (인)

실습지도 교수 : (인)

대구대학교 간호대학



III. 감염관리지침

손위생

대부분 감염전파는 손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손위생은 감염차단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효과적인 방법이다.

손위생 개념

- ▶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와 손소독제를 비벼서 사용하는 손소독을 말한다.
- ▶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행하되, 단 손이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있을 경우 물과 비누로 손씻기를 해야한다.

물과 비누로 손씻기



손이 눈에 보이게 더러워 졌을 경우
혈액, 체액 등에 오염되었을 경우
화장실 다녀온 후 등



손마찰을 15초 이상 수행하고 물로
헹구고 건조시킨다 (전체 40~60초 소요).

물 없이 소독하는 손소독



손소독제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을 때
일상적으로 사용가능



소독제가 마를 때 까지 손과 손가락을
문지른다 (전체 20~30초 소요).

손위생

손위생을 해야하는 경우



환자 접촉 전
청결/무균 처치 전
체액노출위험 후
환자 접촉 후
환자주변환경접촉후

환자이동, 환자부축, 체위변경, 마사지, 옷 입혀주기, 마스크 착용, 목욕 등

구강간호, 안약점적, 객담흡인, 소변백 버리기 전, 음식이나 약물 준비 전

구강간호, 안약점적, 객담흡인, 소변, 대변, 구토물 치우기, 쓰레기 치우기, 소변기나 대변기 등 청소

환자이동, 체위변경, 마사지, 옷 입혀주기, 마스크 착용, 목욕 등

환자 주변 물품이나 장비와 접촉한 후: 린넨교환, 침상난간 잡기, 침상이나 탁자에 기대기, 테이블 청소

손위생

손위생 방법(6단계)

손바닥 ▶ 손등 ▶ 손가락 ▶ 손가락 ▶ 엄지 ▶ 손톱

					
1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2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3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을 끼고 문질러 주세요	4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주세요	5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질러 주세요	6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장갑착용 시 손위생

장갑착용이 손위생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장갑을 착용하더라도 손위생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손위생을 시행한다.

장갑착용 전 손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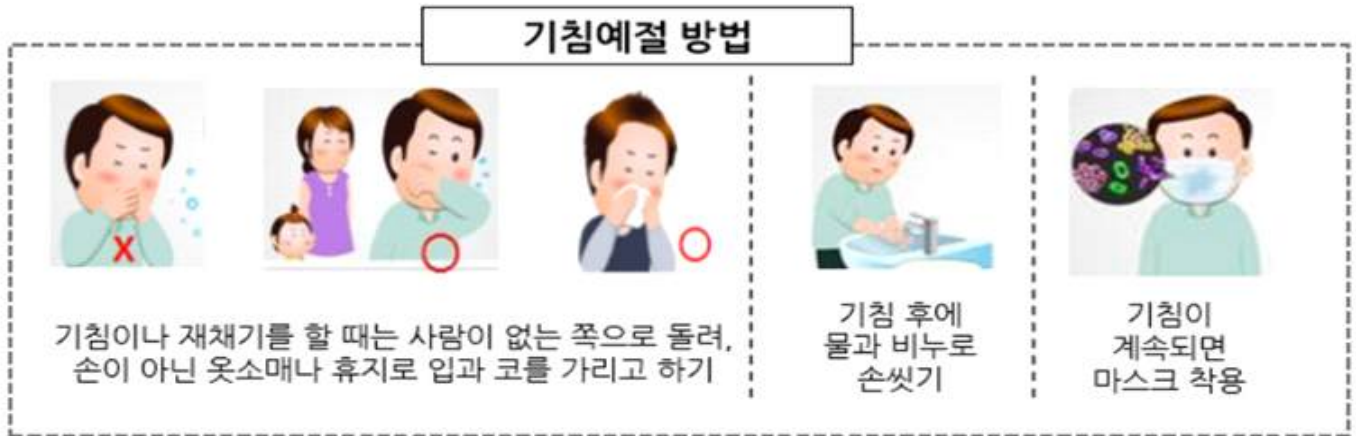


장갑착용 후 손위생



기침예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침과 함께 수많은 미생물이 배출되는데, 손으로 입을 가린 경우에는 손을 심하게 오염시킨다. 따라서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 ‘기침예절방법’을 익히고 준수해야 한다.



- 감기나 백일해 등의 흔한 감염질환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고위험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임
- 기침, 코막힘, 콧물, 재채기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의료진, 수탁교육생, 환자와 내원객 모두에게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첫 시점에 적용되어 마지막 순간까지 잘 준수되어야 함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도록 한다(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휴지나 옷소매 이용하여 가림).
 - 사용한 휴지는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폐기한다.
 -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하거나 튀는 경우 손위생을 수행한다.

개인보호구 착용

개인보호구란

감염성 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복이나 장비를 말하며, 마스크, 보안경, 장갑, 앞치마, 가운 등이 있음

사용원칙

-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또는 배설물과 접촉하여 피부나 의복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
- 청소, 환경소독, 기구 세척 시에 착용
- 개인보호구는 일반적으로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착용
- 개인보호구는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벗어서 버리고, 손위생을 시행

착용방법

착의방법

탈의방법

가운



열린 부분이 뒤쪽으로 가도록 함



오염된 바깥면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함
깨끗한 부분만 밖으로 나오게 접거나 말아서 버림

일반마스크



코, 입, 턱을 충분히 덮어야 함
코에 맞게 고정식을 조정함



아래끈 풀고, 위쪽끈 나중엔 풀기
마스크 바깥면은 만지지 않고 끈잡고 버림

**결핵마스크
N95**



얼굴에 밀착하여 공기를 후~불어서
주변으로 새는지 확인 (공기누설체크)



아래끈 풀고, 위쪽끈 나중엔 풀기
마스크 바깥면은 만지지 않고 끈잡고 버림

보안경



눈에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착용함



장갑을 벗고, 귀나 머리쪽을 잡고 벗음

장갑



소매가 덮이도록 착용함



장갑의 표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벗음

손위생



손씻기 또는 손위생

환경관리

환경소독

- ▶ 병실, 가구, 장비표면 등의 청소 및 소독은 본원 규정에 따른다.
- ▶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 즉시 제거한다.
- ▶ 환경소독제는 물과 희석하여 사용하며, 희석 후 24시간내에 사용한다.

환경소독제 종류	사진	사용방법
락스		물에 100배 희석해서 사용 사용 전에 표면의 오염을 먼저 제거한다. 더운 물에 희석금지(발암물질 생성) 
퀵트플러스		물에 200배 희석해서 사용 사용 전 마스크 착용 

세탁물 관리

세탁물 종류는 아래 두가지로 분리수거한다.

구분	사진	분리수거 항목
오염세탁물		·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 ·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 환자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기타세탁물		오염세탁물 외 세탁물

환경관리

의료폐기물 관리

의료기관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분리수거하여야 하며, 병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폐기물 용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사진	분리수거 항목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격리의료폐기물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감염노출사고 관리

감염노출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 ① 사용한 주사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찔리거나 베인 경우 흐르는 물에 씻는다.
- ② 눈이나 점막에 튄 경우 생리식염수로 충분히 씻어낸다.
- ③ 해당부서장에게 보고 후 감염관리팀에 문의한다.



찔리거나 베인 경우 흐르는 물에 씻어냄



생리식염수로 씻어냄

감염노출 예방법

-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손에 묻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처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장갑 착용한다.
- 주사기는 뚜껑을 다시 씌우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는 한손 방법을 선택한다.



- 정리 시 침상이나 주변을 잘 살펴 날카로운 기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 일반 쓰레기통이나 간호사실, 병실 바닥 등에서 날카로운 물건 발견 시는 집게 등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부득이 손으로 잡아야 할 경우는 날카로운 부분의 뒤를 잡는다.



IV.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습 전 감염관련 서류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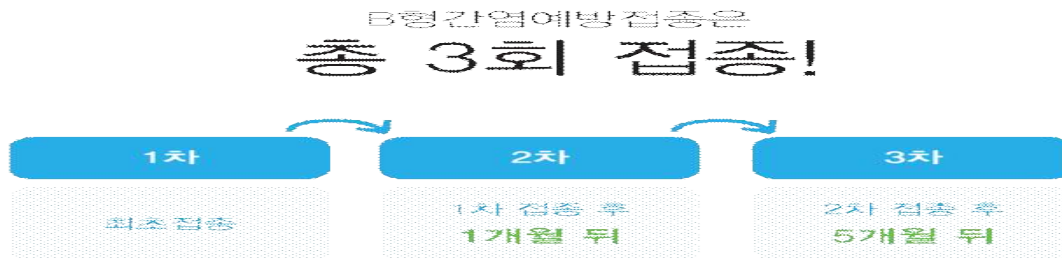
- ① 실습 전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② 결핵과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임상실습 개시 전에 증명서를 학과에 제출해야 하며, 시기는 실습기관의 특성에 따라 학교가 통보하는 시점에 따른다.
- ③ 예방접종과 검진에 해당하는 비용은 학생이 부담한다.
- ④ 학생 본인이 검진 및 예방접종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예방접종

검사항목	대상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B형간염 항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습적시술이나 처치 참여 교육생 예) 의전원생, 간호학과생 등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을 취급 업무에 참여 교육생. 예) 임상병리학과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자: 수탁교육제한 없음 음성자: 수탁교육제한 없으나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예방접종 권유. 혈액, 체액 노출 사고 시 즉시 조치
수두 항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를 직접 대하는 업무 참여 교육생 예) 의전원생, 간호학과생, 물리치료학과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자: 수탁교육제한 없음 음성자: 대상포진환자 접촉 제한, 수두 유행기간 소아과 수탁교육제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예방접종 권유. 수두 노출 사고 시 격리 조치
홍역 항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아환자를 직접 대하는 업무 참여 교육생 예) 의전원생, 간호학과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자: 수탁교육제한 없음 음성자: 홍역 유행기간 소아과 수탁교육제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예방접종 권유. 홍역 노출 사고 시 격리 조치
흉부 방사선 (결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탁교육부서 관계 없이 병원내 수탁교육시간이 총 40시간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 수탁교육제한 없음. 결핵 예방 지침 준수 결핵(의심): 호흡기내과 진료 시행. 결핵 치료 시 최소 2주간 수탁교육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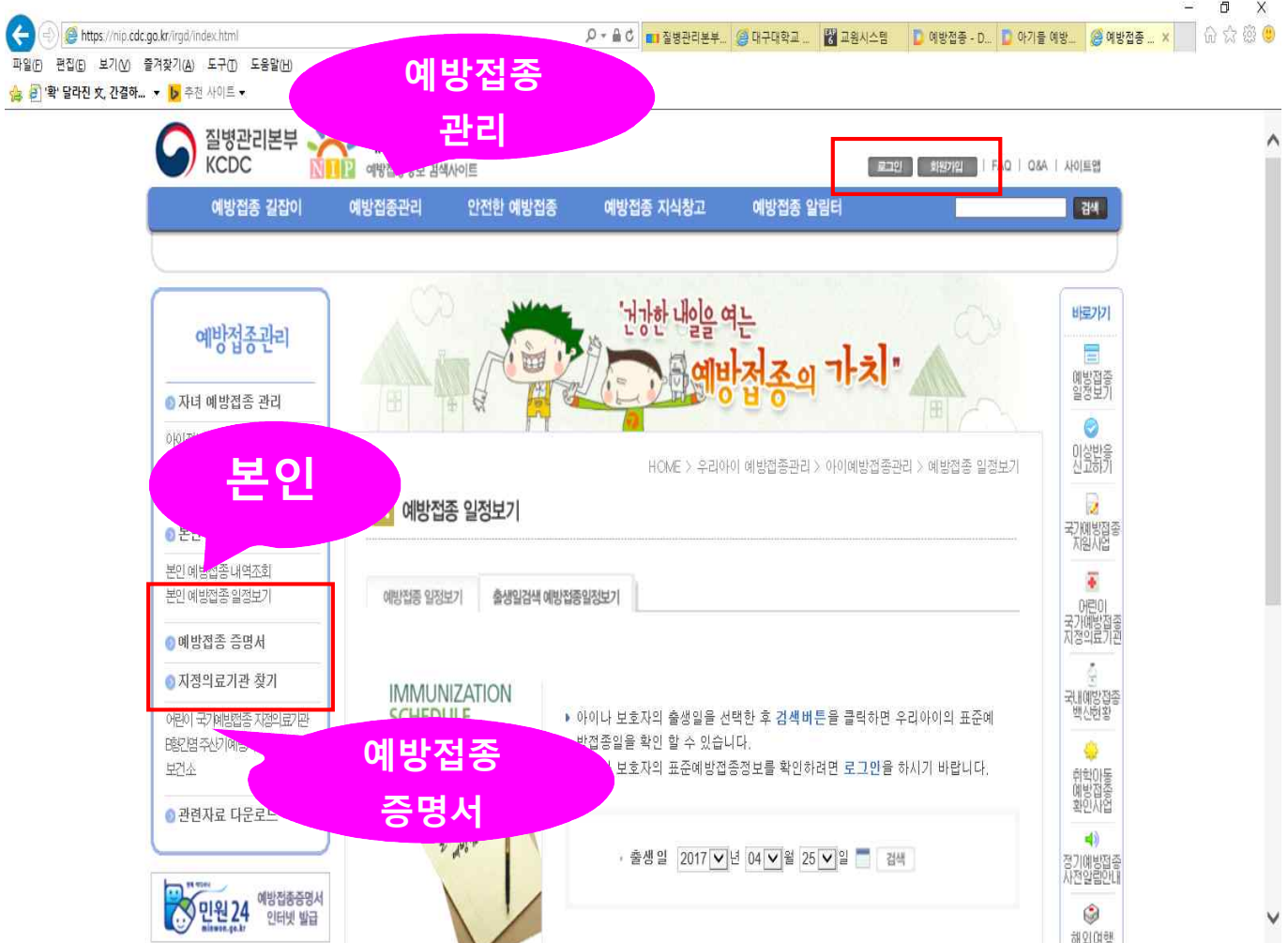
예방접종 및 면역 체계

- B형 간염 : 혈행성



- A형 간염 : 수인성 - 1회 추가 접종
- 성인용Td : 10년 마다 1회 추가접종
- MMR : 1회 접종(가임 여성 : 총진 항체 검사 권고)
- 수두(Var) : 항체 검사 후 2회 접종
- 인플루엔자 : 1회/년
- 결핵 : BCG 접종, Chest X-Ray

예방접종 확인: 질병관리본부



The screenshot shows the KCDC Immunization Confirmation website. A pink speech bubble labeled "예방접종 관리" (Immunization Management) points to the top navigation bar. A red box highlights the "로그인" (Login) and "회원가입" (Sign Up) buttons. A pink speech bubble labeled "본인" (Myself) points to the "본인 예방접종 일정조회" (Check My Immunization Schedule) link in the left sidebar. Another pink speech bubble labeled "예방접종 증명서" (Immunization Certificate) points to the "예방접종 증명서" (Immunization Certificate) link in the sidebar. The main content area shows the "예방접종 일정보기" (Check Immunization Schedule) section with a form for birth date and a search button.



V. 환자 정보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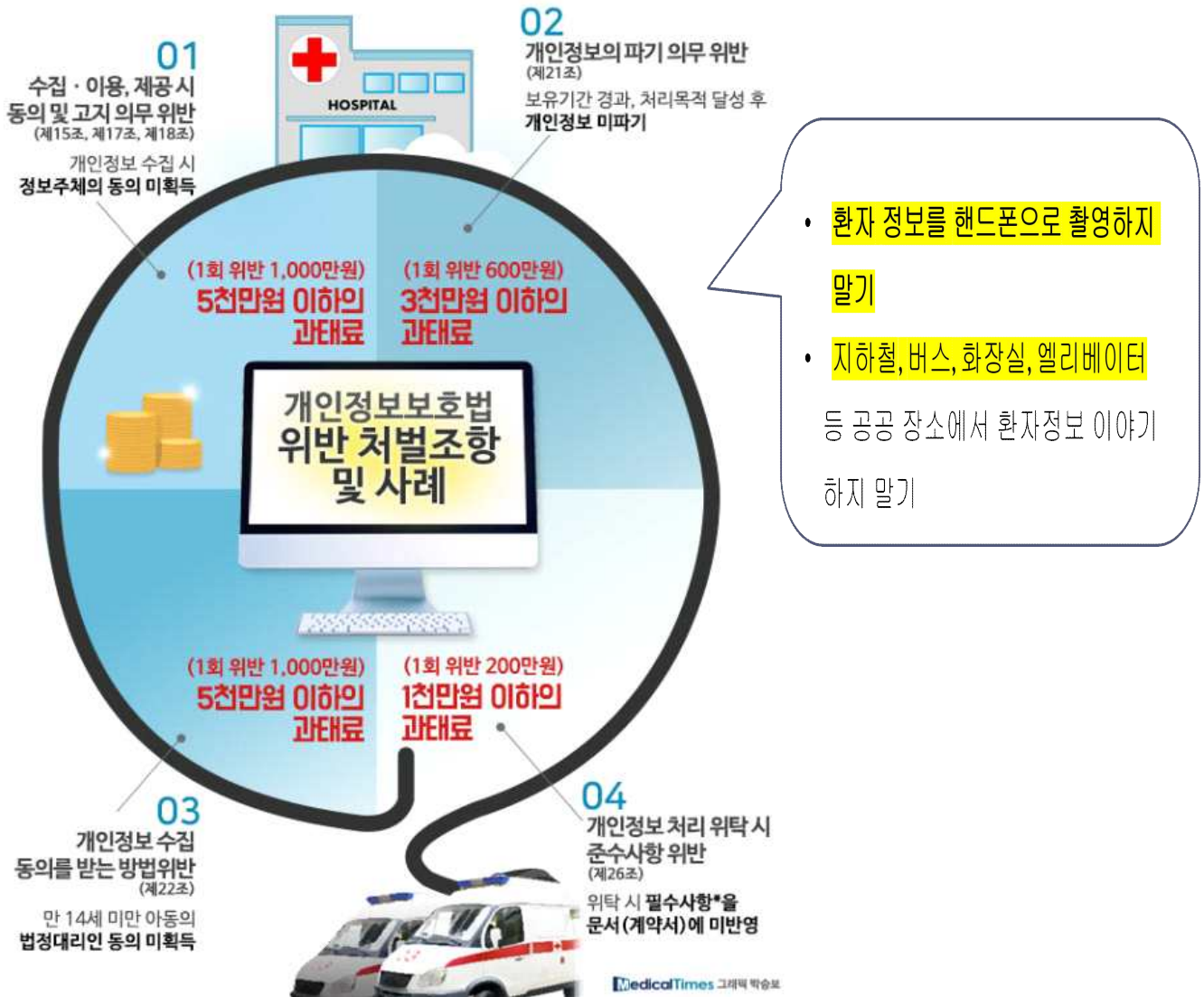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의료정보 보호 및 보안 서약



위반사례

주요위반사례 [안전조치의무]

제 29조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제2조(정의)

20.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자료설명 : 관리용 단말기에 화면 보호기 설정이 미흡하여 비인가자 접근이 가능함

위반사례

주요위반사례 [파기]

제 21조 (개인정보 파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자료설명 : 개인정보 분리보관 미실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사항

1. 실습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에 대해서 비밀 의무의 원칙을 준수한다.
2. 환자의 실명은 개인 일지에 수기로 옮겨 적지 않도록 한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 환자나 실습기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정숙한다.
4. 환자의 입원 여부를 묻는 전화에 학생이 답하지 않고 담당자를 바꿔준다.
5. 환자 정보 수집 시 실습지도자의 허락하에 관찰 또는 열람한다.
6. 환자 정보에 대한 사진촬영, 스크린 캡처 및 복사 행위를 금지한다.
7. 실습 시간 외 환자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한다.



VI. 성희롱 예방 및 대처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말과 행동의 범위는 성적 대상화를 포함하는 음담패설,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성관계 요구에서부터 추행 및 성폭력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대처방법

- ① 성적인 농담이 불쾌하다면 그 자리를 떠나거나 싫다고 분명히 말하라.
 - ② 상대방이 무안해질 것 같아서, 또는 관계가 꺾고러워질 것을 염려하여 성희롱을 묵인하는 것은 관용이나 배려가 될 수 없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문제의 행동을 중지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 ③ 불쾌한 성적 언행에 대한 나의 불분명한 대응이 상대방의 오해를 가중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고, 불쾌한 감정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한다.
 - ④ 음담패설이 싫다면 절대 웃거나 동참하지 말자.
 - ⑤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너무 사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 ⑥ 직장에서 애교를 무기로 삼지 않는다.
 - ⑦ 현장지도자와 임상실습지도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VII. 안전사고 예방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

- **손씻기 철저히 하기(환자 접촉 전후)**
- **이동용 산소 tank 사용하여 이동 시**
 - 잔여 산소량 꼭 확인
 - Nasal cannula, mask 벗겨지지 않았는지 확인
 - 산소 tank와의 연결부위 확인
- **Stretcher cart 이동 시**
 - Stretcher cart로 환자를 옮기기 전에 **바퀴 고정**
 - 환자를 옮긴 후 **side rail**을 항상 올려서 안정하게 이동
 - 이동 시 환자의 **발이 앞으로** 향하게 하여 충돌사고 시 환자 머리 보호
 -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환자의 **머리 쪽**이 먼저 들어가게 함
- **Wheel chair로 이동시**
 - 환자를 옮기기 전에 바퀴 고정
 - 환자를 옮기기 전에 wheel chair의 발판을 올린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 체위성 저혈압이 있는지 사정
 - 배액관을 부착하고 있는 경우
 - 배액주머니는 상처부위보다 낮게 유지
 - 배액관이 꼬이거나 당기지 않도록 고정

주의사항

- 걸어서 이동시

- 미끄럽지 않고 발에 꼭 맞는 신발 착용
- 보행 전 체위성 저혈압의 징후와 증상을 신중히 사정
- 환자의 보행 속도 맞추어 걸음
- 환자가 허약하거나 불안정하면 약한 편에 서서 환자의 팔장을 끼고 이동
- 계단으로 이동 시 환자를 부축하여 함께 이동
- 환자 상태 변화나 어지러움 호소 시 환자를 가까이 있는 의자에 앉히고 상태 관찰하기

- 낙상예방

→ 손목 명찰에 ‘낙상 고위험 스티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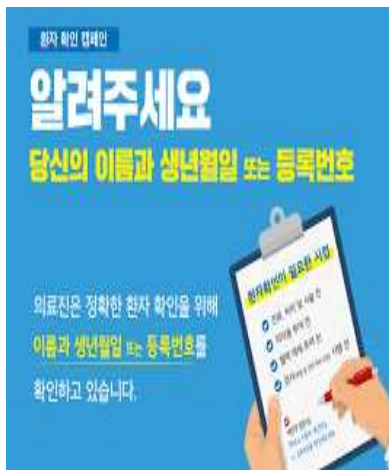


주의사항

- **낙상 고위험 환자**

- 입원환자 중 ‘낙상 고위험 스티커’ 부착 환자
-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신생아실, 집중치료실, 응급실 환자
- 외래, 검사실
- 휠체어, stretcher cart, 침대로 이동하는 환자
- 보행장애, 시력장애가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환자
- 의식저하, 어지러움, 전신허약 등을 호소하는 환자
- 입원환자 중 ‘낙상 고위험 스티커’ 부착한 환자

- **정확한 환자 확인 필요!!**





VIII. 기타 주의사항

주의사항

- 실습 시작 10분 전까지 실습 장소에 도착 (지각, 결석하지 않는다)
- 병결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 (실습기관과 학교)
- 환자 이상 시 반드시 현장지도자에게 보고
- 실습복, 명찰, 신발 단정히 준비하기
- 실습장소(예, 병실, 기관)에 들어갈 때 인사하기
- 실습기관에서 호칭 주의 “네, 선생님/수간호사 선생님”
- 신발 꺾어 신지말기
- 식사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식사만 하기 (매점 이용 자제하기)
-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기, 조용히 하기
- 탈의실 깨끗하게 사용하기
- 도난주의, 귀중품 가지고 가지 말기
- 무단 이탈 금지, 핸드폰 사용 금지
- 대상자 비밀 유지
- 개인적 모임 금지
- 개인적 외출, 외식 자제
- 타지역 거주자 관리강화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 (2) 실습 전/중/후 타지역 방문 및 고위험시설 (노래방, PC방, 클럽, 영화관 등) 방문 금지!!
- (3) 평소 체온 측정 및 이상증상 발생 유무에 대해 주의 깊게 자가모니터링 하기
- (4) 건강이상증상 발생 시 즉각적으로 검사 실시 및 **임상실습담당교원에게 보고**
- (5) 임상실습 기간 중 **실습기관 방문 이외 다른 외출 자제하고, 사적 모임 자제!!**
예 : **여행, 아르바이트, 친구와의 사적 모임 및 식사**

KF 94 마스크 착용하기





건강하고 안전한
임상실습이 됩시다.

2023학년도 안전교육

발행 대구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